

선	기관의 장
람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18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19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 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20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 8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21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10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22호(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 ... 1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23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 17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24호(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27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25호(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개정조례) 38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00호(2004년도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 4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01호(2004년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계획공고) 6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02호(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한공고·공람) 6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05호(민간용역(전자)입찰공고) 6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06호((긴급)공사입찰공고(전자입찰)<공사명: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조성전기공사(2,3호광장)>) 6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07호((긴급)용역입찰공고(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실시시설계용역)) 7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08호((긴급)용역입찰공고(전자입찰)<소래포구(항)정비공사(3단계)실시시설계용역>)) .. 7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09호((긴급)용역입찰공고(인천대공원~9공수간인도설치공사실시시설계용역>)) 7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12호(공시송달공고(과태료부과에따른의견제출통지)) 7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13호((긴급)용역입찰공고(전자입찰)<2004년도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및사후관리용역>) . 7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14호(용역(재공고)입찰공고(남동국민체육센터신축공사감리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 82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4-1호(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 86

회								
람								

조	례
---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조례 제 718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 활동
비를 의원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의정활동 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만원으로 하며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으로 남동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 동 차 운 입	일 비 (1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장,부의장	1 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의 원	2 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5,000	18,000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단위:미불화)

지급 기준액 구분	항공임	등 급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야당)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부의장	1 등 정 액	가	35	166	107	140	170	195
		나	35	120	78			
		다	35	92	58			
		라	35	79	49			
의 원	2 등 정 액	가	30	145	81	130	155	180
		나	30	95	59			
		다	30	70	44			
		라	30	62	37			

☐ 개 정 이 유

지방자치법 개정(2003. 7. 18. 법률 제6927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1호)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를 조정코자 하는 것임

☐ 주 요 골 자

- 자치구 의회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 월 20만원 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자치구 의회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 함(안 제6조 별표 1, 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조례 제 719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정례회 회기가 연말까지 계속되어 마무리 사업과 연초 사업계획수립등 연내 해결해야 하는 일 등과 맞물려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코자 함

☐ 주요골자

- 현행 제2차 정례회 집회일 12월 1일을 11월 25일로 변경
(안 제3조제2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조례 제 720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2003.7.18, 법률 제6927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2003.12. 18, 대통령령 18161호)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 (안 제5조제1항제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21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단체
3.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2. 위촉직 위원 :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 지방의회의원 3인, 민간전문가 또는 대학교수등 3인으로 구청장이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액 폐지,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여 보조금총액 상한제를 도입 운영하고
-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4조 ~ 제5조)
 - 지원대상 : 법령·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단체, 구가 권장하는 사업
 - 지원범위 :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안 제6조 ~ 제9조)
 - 지원계획 수립· 공고 → 신청· 접수 → 심의 → 결과 통보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기능(안 제10조, 제11조)
 - 구성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인
 - 기능 :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 등
-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안 제17조, 제18조)
 -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결과 등 보고의무화, 보조금에 대한 별도 계정의 설정· 관리 등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22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
인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대통령령 2003.
6.23)되어 그 존치실익이 상실되었기 폐지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23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

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3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 제 조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 개정이유

-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12.31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 감면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정비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받을 주체를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5조)
-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간으로 축소함(안 제12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세제 지원(안 제21조)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삭제(개정전 조례 제24조)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부칙 안 제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24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 라 한다)를 말한다.
3. 사용이라 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제4조 (소규모급수시설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①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울타리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수질검사) ①구청장은 수도법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

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①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구청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

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①구청장은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3장 관리비 징수

제12조 (관리비 징수) ①협회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비(전기료, 기타 유지관리 필요비용 포함)로 징수할 수 있다.

②관리비는 최소경비로 산출하여야 하며 징수액 결정 및 지출방법 등은 “관리비 운영 세부규정”을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정한 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계량기) ①관리자는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사용가구에서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4조 (설치)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 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구성 및 임무) ①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급수시설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시설관리책임자는 대표자를 보좌하고 대표자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협의회는 선출된 대표자와 시설관리책임자 등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회의)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②회의의 의결정족수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③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용자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 (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회사, 전문가 포함)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 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와 시설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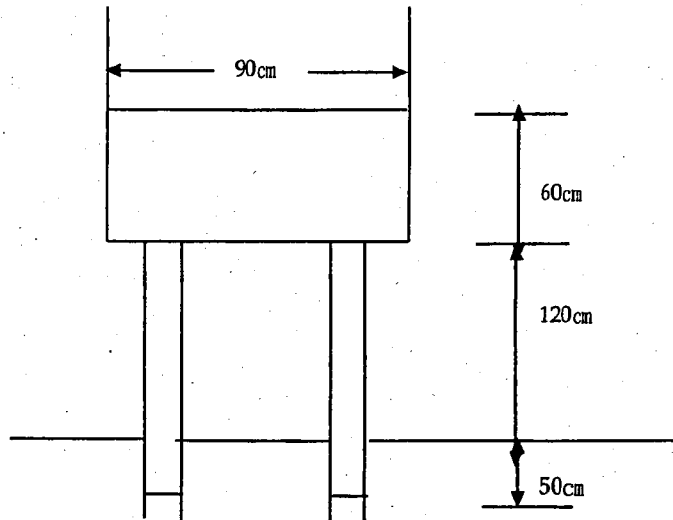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 (제5조제1항관련)

○ 규 격



- 재료 : 표지판 - 알루미늄(두께 3mm), 기둥 - 스테인리스(직경 50mm)
- 색채 : 바탕(흰색), 글씨(청색)

○ 내용문안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발견 시 연락처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TEL : 453-2430)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 (제4조제2항관련)

관리번호	남동구 제 호									
구 분	항 목	내 역								
일반 현황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마을								
	관 라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준공연월일							최초사업자		
시설 현황	수원의종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								
	취 수 시 설	보유시설	①집 수 정 ②양 수 모 터 ③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집 수 정1				심도	M		
			집 수 정2				심도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 수 시 설	보유시설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송·배수 관 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 중 별 총연장(M)		
		관 중	직 경	연 장	관 중	직 경	연 장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총 계			m			m	총계 :	m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제 한 급 수	1차 :		2차 :		3차 :				
수원 상태	수 질 오 염	수질검사상태			주변오염원 산재여부					
	출 수 상 태									
특기 사항	시 설 보 수									
	수 원 이 전									
	급 수 상 태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제1항관련)

관리번호	남 동 구 제 호	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 · 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 · 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 · 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 · 관리상태			
○ 관로 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 · 관리 상태			
오염물 제거	취수원 부근		
	배수지 부근		
기 타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7조제1항관련)

관리번호	남 동 구 제 호	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성명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 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 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여부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 개정사유

수도법의 개정으로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 등 급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함 (안 제4조).
- 관리자는 수질감사 및 정기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함 (안 제8조).
-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또는 재해·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는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구청장이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 등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안 제11조).
-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는 사용자대표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안 제14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의조례
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25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의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폭20m미만의 도로와 20m이상 도로의 보도”를 “폭20m미만의 도로, 20m이상
도로의 보도 및 도로 횡단구간”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2호의 “남동구수도사업소장”을 “남동수도사업소장”으로,
제3호의 “간석전신전화국 선로부장”을 “KT인천지사 기술부장”으로,
제4호의 “한국전력인천지사 배전부장”을 “한국전력남인천지점 배전부장”으로,
제5호의 “남부경찰서 교통과장”을 “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제6호의 “도시가스 관련부장(인천가스,삼천리가스 해당지역)”을 “도시가스
관련부서장[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해당지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매월”을 “매분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안 이 유

- 조례상에 누락되었던 적용범위를 반영하고,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위원의 소속기관(사) 및 부서명 개편에 따른 그 직책명 개정 및 정기회 개최시기를 변경코자 함.

☐ 주 요 골 자

- 조례의 적용범위 반영
- 위원 소속기관(사) 및 부서명 개편에 따른 직책명 개정
- 도로관리심의 정기회 개최시기 개정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100호

2004년도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 공개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재정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4년 2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가. 재정규모

- 2004년 남동구의 예산규모는 총 156,044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4% 증가한 131,614백만원, 특별회계는 8.8% 증가한 24,430백만원임.
- 재정자립도는 41.8%로 국가 및 시 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편임.

나. 재정여건 및 운영 방침

- 국내 경제 여건이 점차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제한적 세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예산의 긴축 운영
 -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진행중인 투자사업 우선 추진
 - 경상경비의 절약 및 선심성 행사경비의 절감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재원 확보노력 강화
 - 신규, 탈루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노력 극대화
-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 우선 반영
 - 위험시설물 정비 및 재난, 재해 예방사업 적극 반영

2.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가. 총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도 예산액	200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비 고
				%	
합 계	156,044,179	146,083,693	9,960,486	6.8	
일 반 회 계	131,614,421	123,643,070	7,971,351	6.4	
특 별 회 계	24,429,758	22,440,623	1,989,135	8.8	
의료급여기금	55,325	56,800	△1,475	△2.5	
저 소득 주 민 생활안정기금	1,918,000	1,840,585	77,415	4.2	
주 차 장	4,857,221	5,134,395	△277,174	△5.3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1,400,998	2,000,000	△599,002	△29.9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4,828,940	7,400,000	△2,571,060	△34.7	
만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8,671,404	2,608,843	6,062,561	232.3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697,870	3,400,000	△702,130	△20.6	

나: 일반회계(세입,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도 예산액	구성비 (%)	2003년도 당초예산액	구성비 (%)	증 감	%
합 계		131,614,421	100	123,643,070	100	7,971,351	6.5
세 입	지방세수입	23,709,552	18.0	20,164,053	16.3	3,545,499	17.6
	세외수입	31,312,909	23.8	33,799,725	27.3	△2,486,816	△7.3
	경상적세외수입	17,695,977	13.4	15,709,218	12.7	1,986,759	12.7
	임시적세외수입	13,616,932	10.3	18,090,507	14.6	△4,473,575	△24.7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42,000,000	31.9	40,048,288	32.4	1,951,712	4.9
	보조금	34,591,960	26.3	29,631,004	24.0	4,960,956	16.8
	국고보조금	22,475,441	17.1	20,438,187	16.5	2,037,254	10.0
	시·도비보조금	12,116,519	9.2	9,192,817	7.4	2,923,702	31.9
세 출	경상예산	51,599,306	39.2	47,901,575	38.7	3,697,731	7.8
	인건비	28,021,362	21.3	24,780,281	20.0	3,241,081	13.1
	경상적경비	23,577,944	17.9	23,121,294	18.7	456,650	2.0
	사업예산	71,855,999	54.6	66,713,125	54.0	5,142,874	7.8
	보조사업	41,658,748	31.7	36,985,460	29.9	4,673,288	12.7
	자체사업	30,197,251	22.9	29,727,665	24.0	469,586	1.6
	채무상환	321,081	0.2	443,118	0.4	△122,037	△27.5
	지방채상환	321,081	0.2	443,118	0.4	△122,037	△27.5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등	7,838,035	6.0	8,585,252	6.9	△747,217	△8.7
	예비비	2,249,365	1.7	2,093,750	1.7	155,615	7.5
	기타	5,588,670	4.2	6,491,502	5.3	△902,832	△13.9

다. 특별회계(세입,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도 예산액	구성비 (%)	2003년도 당초예산액	구성비 (%)	증 감	%
합 계		24,429,758	100	22,440,623	100	1,989,135	8.9
세 입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0
	세외수입	20,051,578	82.1	19,924,928	88.8	126,650	0.7
	경상적세외수입	4,410,678	18.1	8,451,363	37.7	△4,040,685	△47.8
	임시적세외수입	15,640,900	64.0	11,473,565	51.1	4,167,335	36.4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0
	보조금	4,378,180	17.9	2,515,695	11.2	1,862,485	74.1
	국고보조금	0	0.0	0	0.0	0	0.0
	시.도비보조금	4,378,180	17.9	2,515,695	11.2	1,862,485	74.1
	경상예산	637,006	2.6	495,467	2.2	141,539	28.6
세 출	인건비	122,008	0.5	66,916	0.3	55,092	82.4
	경상적경비	514,998	2.1	428,551	1.9	86,447	20.2
	사업예산	10,177,548	41.7	15,444,034	68.8	△5,266,486	△34.1
	보조사업	2,405,712	9.8	155,695	0.7	2,250,017	1445.2
	자체사업	7,771,836	31.8	15,288,339	68.1	△7,516,503	△49.1
	채무상환	1,900,000	7.8	2,069,000	9.2	△169,000	△8.1
	지방채상환	1,900,000	7.8	2,069,000	9.2	△169,000	△8.1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등	11,715,204	48.0	4,432,122	19.8	7,283,082	164.4
	예비비	11,700,204	47.9	4,413,122	19.7	7,287,082	165.2
	기타	15,000	0.1	19,000	0.1	△4,000	△21.0

3.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구 분	지방세예정액	인 구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비 고
계	206,065백만원	392,478명	525천원	
시 세	182,356백만원	392,478명	465천원	
구 세	23,709백만원	392,478명	60천원	

4. 지방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3년말 현재액(A)	2004년도 계획		2004년도 이후 상환예정액 (A+B-C)
		발 행(B)	상 환(C)	
계	554	1,000	321	1,233
일반회계	554	1,000	321	1,233
특별회계	-	-	-	-

5. 기금운용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설치 년도	2003년도말 기금조성액 (A)	2004년 운용계획		2004년도말 예상액 (A+B-C)	설치근거	운 용 부 서
			수입액 (B)	지출액 (C)			
계		9,342	1,499	447	10,394		
체육진흥기금	1995	700	33	28	705	남동구체육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문 화 홍보실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2003	202	425	10	617	남동구문화예술진흥 기금설치및운용조례	문 화 홍보실
사회복지기금	1999	1,442	372	105	1709	남동구사회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사 회 복지과
식품진흥기금	2001	514	128	50	592	식품위생법 제71조, 남동구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환 경 위생과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994	3,581	250	200	3,631	남동구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및운용조례	지 역 경제과
도 시 가 스 사 업 기 금	1993	1,794	132	4	1,922	남동구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및운용조례	지 역 경제과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2000	1,109	159	50	1,218	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 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건설과

6.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취득처분계획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 (A)	2004년 계획		2004년도말 현재 (A+B-C)	비 고
		증가(B)	감소(C)		
계	139,994	5,852	0	145,846	
행정재산	133,322	5,852	0	139,173	
보존재산	0	0	0	0	
잡종재산	6,672	0	0	6,672	

나. 중요물품 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보유현황(A)	2004년계획		2004년도말 보유현황 (A+B-C)	비 고
		취득(B)	처분(C)		
수 량	885	17	26	876	
금 액	5,061	195	133	5,123	

※ 정수물품에 한하여 작성

♣ 기타 세부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incheon.kr>)

2004년도 재정운영상황공개 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문의처 : 남동구청 기획감사실 예산팀 (☎ 453-2060)

라. 주요사업조서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합 계			3,474,715	
보건사회부문			21,238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10개소	사회복지과	10	
○경로당 개,보수	40개소	사회복지과	18	
○운연동 경로당부지 매입	A=165㎡	사회복지과	5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0개	사회복지과	20	
○취로형 자활 근로사업	65명	사회복지과	352	
○민간 장애아시설 개.보수	3개소	사회복지과	15	
○무료요양,전문요양,실버 요양시설지원	1식	사회복지과	295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식	사회복지과	104	
○노인 단기보호사업	1식	사회복지과	74	
○노인 주간보호사업	1식	사회복지과	67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6개소	사회복지과	120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5개소	사회복지과	22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식	사회복지과	50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 지원	23개소	사회복지과	14	
○경로당 활성화 확대사업	5개소	사회복지과	22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장비 구입	1식	사회복지과	10	
○보육사업	1,316명	사회복지과	2,852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저소득 자녀 민간시설 이용차액 보조	250명	사회복지과	62	
○보육시설 난방비	6,750명	사회복지과	94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	85명	사회복지과	67	
○보육교사 처우개선	366명	사회복지과	220	
○보육교사 특성화 교육비 지원	26명	사회복지과	10	
○저소득 아동 간식비	598명	사회복지과	89	
○가정 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1식	사회복지과	100	
○성폭력 상담소 운영	1식	사회복지과	53	
○성폭력 피해자 치료사업	1식	사회복지과	24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2개소	사회복지과	300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만수,만월)	2개소	사회복지과	102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2개소	사회복지과	84	
○장애인복지관 운영	1식	사회복지과	715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1식	사회복지과	6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식	사회복지과	41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2개소	사회복지과	4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식	사회복지과	122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식	사회복지과	6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1식	사회복지과	9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1식	사회복지과	44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일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3개소	사회복지과	94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지원(부모회)	1식	사회복지과	2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1식	사회복지과	55	
○기초생활보장 급여 (근로소득공제)	1식	사회복지과	11,169	
○한센양로자 지원	30명	사회복지과	44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식	사회복지과	150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	120명	사회복지과	1,081	
○푸드뱅크사업지원	1식	사회복지과	11	
○노인복지회관위탁금	1식	사회복지과	381	
○장수경로당 개축	지상2층	사회복지과	131	
○구월1동 경로당 신축	1식	사회복지과	300	
○만월복지관 증개축 공사	1식	사회복지과	400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 지원	1식	보 건 소	60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 (DPT외3종)	1식	보 건 소	83	
○노인 의치보철 사업	1식	보 건 소	43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급	1식	보 건 소	391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	1식	보 건 소	122	
○임시 예방접종약품 구입	3종	보 건 소	23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식	보 건 소	76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1식	보 건 소	39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	14,500명	보 건 소	64	
산업경제부문			2,935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식	지역경제과	19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1식	지역경제과	29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18,480포	지역경제과	23	
○토양개량제 공급	486톤	지역경제과	33	
○축사소독시설 지원사업	3개소	지역경제과	6	
○불가사리 구제사업	100톤	지역경제과	72	
○공공근로사업	1식	지역경제과	828	
○창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1식	지역경제과	700	
○간석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1식	지역경제과	400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대지면적 285.9㎡	지역경제과	825	
청소환경부문			8,882	
○해안쓰레기 투기방지시설 (철조망)설치	L=620m	청 소 과	50	
○해안쓰레기 투기방지 철조망 미관조성(식재)	1식	청 소 과	30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 보완공사	1식	청 소 과	50	
○음식물 자원화 오수이송시설 보완공사	1식	청 소 과	100	
○해안 쓰레기수거 처리	540톤	청 소 과	147	
○공중화장실관리 용역	1개소	청 소 과	15	
○쓰레기대행수수료	1식	청 소 과	5,046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도시환경정비 및 무단방치	1식	청 소 과	201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1식	청 소 과	733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1식	청 소 과	339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 용기 세척 위탁 처리비	1식	청 소 과	100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	1식	청 소 과	14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금	1식	청 소 과	9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식	청 소 과	98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1식	청 소 과	981	
도로유지관리			251,468	
○부적합 가로등정비 사업	1식	건 설 과	304	
○인천대공원후문~9공수간 인도설치 공사	L=1,000m, B=1.5m	건 설 과	1,500	
○고잔동209-2번지부근 도로 개설 공사	A=276㎡	건 설 과	60	
○고잔동390-4번지부근 도로 개설 공사	A=911㎡	건 설 과	250	
○고잔동소1-8호선 도로개설 공사	A=1,355㎡	건 설 과	350	
○남촌동 청호@부근 도로개설 공사	A=290㎡, L=78m,B=8m	건 설 과	410	
○보루네오부근 도로개설 공사	L=412m,B=6m	건 설 과	762	
○구월동 소방본부뒤 도로개설 공사	L=250m,B=10m	건 설 과	250	
○구월동 소방본부옆 도로개설 공사	L=64m,B=10m	건 설 과	101	
○간석동900-158번지주변 과년도 토지매입비	A=9.8㎡	건 설 과	10	
○간석동6-46번지주변 과년도 토지매입비	A=464㎡	건 설 과	50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만수동606-4번지 과년도 토지매입비	A=40㎡	건 설 과	10	
○도로굴착복구비	1식	건 설 과	704	
○인천대공원 및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1식	건 설 과	40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1식	건 설 과	302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1식	건 설 과	302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건 설 과	70	
○구월동201번지일원 도로정비 공사	L=1,350m, B=6m	건 설 과	101	
○간석3동사무소주변 도로정비 공사	L=410m, B=8~10m	건 설 과	58	
○논현동 소래수협주변 도로 정비 공사	L=190m,B=15m	건 설 과	86	
○간석동254-7번지주변외1개소 도로정비 공사	L=575m, B=6~8m	건 설 과	59	
○논현동66-5번지부근 도로개설 공사	A=397㎡	건 설 과	400	
○남촌초등학교부근 도로개설 공사(부족분)	1식	건 설 과	30	
○운연동 중3-184호선 도로 개설공사	지장물5동	건 설 과	67	
○남동공단 가로등정비 공사	1식	건 설 과	397	
○관내 볼라드정비 공사	1식	건 설 과	25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	1식	건 설 과	40	
○도로개설구간 보상건물 철거비	1식	건 설 과	91	
○항촌지구 주진입도로개설 공사	L=840m, B=20~28m	도시계획과	8,493	
○서창동 제2경인국도주변 농로 포장 공사	L=1,600m, B=4m	도시계획과	192	
○운연동6번지일원 농로포장 공사	L=500m,B=4m	도시계획과	60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남촌동59번지일원 도로정비 공사	L=100m,B=3m	도시계획과	43	
○도림동219-2번지일원 절개지 보수 공사	L=40m,H=3m	도시계획과	21	
○남촌동214번지일원 농로포장 공사	L=600m,B=3m	도시계획과	54	
○구월동627-5번지일원 도로 정비공사	L=350m,B=3.5m	도시계획과	15	
○도림동484번지와1개소 절개지 보수 공사	L=70m,B=2m	도시계획과	24	
○수산동332번지일원 농로포장 공사	L=450m,B=3m	도시계획과	40	
○남촌동 중앙길외 4개소 농로 포장 공사	L=950m, B=2.5~4m	도시계획과	100	
○운연동519번지일원 농로포장 공사	L=1,000m, B=1.5m	도시계획과	50	
○서창동 장골길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 공사	L=2,200m, B=2.5m	도시계획과	150	
○수산동119번지일원 농로포장 공사	L=2,000m, B=2.5m	도시계획과	70	
○운연천일원 도로포장 공사	L=2,000m, B=2.5m	도시계획과	80	
○수림공원~건설회관간 도로개설	L=1,080m, B=25~30m	인천광역시	15,250	
○만수3지구~서창지구간 도로개설	L=680m,B=25m (지하L=480m)	인천광역시	32,915	
○남동로~만수3택지간 도로 개설 공사	L=2,200m, B=30m	인천광역시	18,041	
○만월산터널 축조공사	L=2,871m, B=35m	인천광역시	152,654	
○간석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L=450m,B=21m	인천광역시	14,350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구월1139)	L=450m,B=10m	인천광역시	573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도로,인도,하천정비등)	1식	기획감사실	900	
○남동공단 구조물 정비 공사	1식	출 장 소	30	
○만수동 소3-88호선 도로개설 공사	L=100m,B=6m	도시계획과	170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만수동 소3-92호선 도로개설 공사	L=96m,B=6m	도시계획과	160	
○만수동 소3-86호선 도로개설 공사	L=180m,B=6m	도시계획과	202	
하천하수도부문			78,198	
○장수동 국골농장일원 농로 및 하천정비 공사	L=600m,B=4m	도시계획과	174	
○장수동 은행나무일원 소하천 정비 공사	L=200m,H=4m	도시계획과	136	
○구월4동 전자울일원 소하천 정비공사	L=200m,H=3.5m	도시계획과	120	
○남촌동79번지일원 하천정비 공사	L=450m,B=3m	도시계획과	165	
○구월동475번지일원 구거정비 공사	L=200m,B=1.5m	도시계획과	50	
○하수역류 방지밸브 설치	1식	건 설 과	21	
○구월동 전자울외4개소 제방 복구	L=203m,H=2m	건 설 과	60	
○발촌천 제방복구 공사	1.5*1.5, L=52m	건 설 과	91	
○장수지하차도부근 하수박스 매설공사	1.5*1.5, L=150m	건 설 과	181	
○관내일원 집수받이 준설공사	1식	건 설 과	50	
○수문유지관리비	7개소	건 설 과	15	
○남촌동 세일빌라일원 침수 예방대책 실시설계 용역비	A=180a, L=520m	건 설 과	75	
○걸재천개수공사	L=800m	건 설 과	300	
○간석역일원 하수박스 증설	L=652m	건 설 과	5,300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맨홀, 집수받이등	건 설 과	300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φ 300~1,200mm L=1,000m	건 설 과	100	
○만수3택지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φ 300~1,200mm L=5km	건 설 과	50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논현동 소래지역외1개소 하수도 준설공사	φ 300~1,200mm L=40km	건 설 과	30	
○구월배수펌프장 및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준설 공사	L=1,200m	건 설 과	100	
○남동공단 1,2단지 하수도 준설 공사	φ 300~1,200mm L=20km	건 설 과	100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L=30km, V=1,000㎥	건 설 과	300	
○장수천 하수관거 정비공사	1식	건 설 과	50	
○만수하수처리장 건설	7만톤/일(1단계)	인천광역시	70,400	
○고잔동712-3번지 하수도 준설 공사	1식	출 장 소	30	
도시계획부문			3,032,485	
○소래지역 도시개발계획수립 용역	A=326,258㎡	도시계획과	1,200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A=185,400㎡	도시계획과	1,401	특별회계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	A=428,267.9㎡	도시계획과	4,829	특별회계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A=155,990㎡	도시계획과	2,698	특별회계
○만부지구토지매입비	토지 24필지 건물 28동	도시계획과	1,574	
○장수지구 택지개발 사업	A=42,597㎡	대한주택공사	13,900	
○논현2택지개발 사업	A=2,503,925㎡	대한주택공사	3,000,000	
○수도권생태공원조성 (교량축조,생태주차장)	1식	도시정비과	4,509	
○소래포구 조형물설치 공사	1식	도시정비과	387	
○소래어선 정박시설 확충공사	L=80m, B=4m	도시정비과	300	
○소래포구(항) 정비공사(3단계)	1식	도시정비과	1,500	
○불법광 고물부착방지판설치	1식	도시정비과	87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용역	1식	도시정비과	60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1식	도시정비과	40	
공원녹지부문			8,552	
○남동공단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연면적 112.4㎡	도시정비과	340	
○공원녹지내등 보수 및 신설 공사	62개소	도시정비과	30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	56개소	도시정비과	201	
○공원화장실 수시정비	19개소	도시정비과	15	
○남동공단근린공원 운동장 정비 공사	1식	도시정비과	195	
○남동공단근린공원 야외무대 설치 공사	1식	도시정비과	250	
○공원놀이시설 개보수공사	2개소	도시정비과	60	
○공원내 수목 전지공사	12개소150주	도시정비과	30	
○공원녹지조경시설물 및 수목관리	1식	도시정비과	71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공사	A=5,919㎡	도시정비과	700	
○미래광장시설수시정비	1식	도시정비과	30	
○수목 및 조경시설수시정비	10회	도시정비과	121	
○가로수보식공사	100본	도시정비과	30	
○가로수전지공사	1,200주	도시정비과	30	
○대형수목 외과수술 및 병충해 방제	500주	도시정비과	20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1식	도시정비과	296	
○만월산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공사	1식	도시정비과	250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미래광장분수시설 관리 용역	1식	도시정비과	33	
○미래광장조경시설 관리 용역	1식	도시정비과	100	
○노상적치물단속용역비	1식	도시정비과	280	
○제5선착장 및 생태공원시설 경비 용역	1식	도시정비과	200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	6개소	도시정비과	32	
○남촌동308-1,2번지 소촌공원 조성 공사	A=524㎡	도시정비과	100	
○전자울체육공원 조성	A=37,841㎡	도시정비과	1,000	
○만수동822-31번지 돌골공원 조성 공사	A=2,086㎡	도시정비과	194	
○중앙공원1지구 공원조성	A=39,900㎡	인천광역시	1,000	
○간석4동 606-2 벌터고개공원 조성	1식	도시정비과	2,709	
○담장허물기사업	1식	도시정비과	100	
○옹벽녹화사업	1식	도시정비과	60	
○공원시설물 보수 공사 (파고라,의자등)	1식	출 장 소	20	
○공원 음수대 설치 및 배수관 정비	1식	출 장 소	30	
○남동공단2호공원외3개소 화장실 보수 공사	1식	출 장 소	25	
도시교통부문			9,785	
○보행자 무단횡단금지시설 정비	1식	교 통 과	10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	교 통 과	10	
○과속방지턱 정비	1식	교 통 과	34	
○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1식	교 통 과	60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건물철거 및 주차장설치 공사	1식	교 통 과	16	
○불법주정차건인.보관 대행수수료	1식	교 통 과	480	
○ 불법주정차 단속용역비	1식	교 통 과	211	특별회계
○간석1동901-43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주차면 22면	교 통 과	1,325	특별회계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보조	1식	교 통 과	130	특별회계
○소규모임시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	1식	교 통 과	50	특별회계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	10,000m	교 통 과	35	특별회계
○주정차금지시설물 설치 및 정비	10,000m	교 통 과	40	특별회계
○간석1동900-29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주차면 30면	교 통 과	1,508	특별회계
○간석2동187-2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주차면 34면	교 통 과	962	특별회계
○간석동37-6번지일원.주차장 설치공사	A=799㎡	도시계획과	550	특별회계
○간석4동233-14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주차면 31면	교 통 과	1,587	특별회계
○남촌동512-48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주차면 210면	교 통 과	843	특별회계
○이면도로 노성주차장 정비 사업	1식	교 통 과	80	특별회계
○모래내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면수 32면	교 통 과	1,249	
○버스승강장주변 안내도 제작 설치	10개소	민원지적과	11	
○만수동 1097-3번지일원 주차장 건설	A=596.4㎡	도시계획과	459	특별회계
○만부1호 주차장설치 공사	A=375㎡	도시계획과	80	
○만부2호 주차장설치 공사	A=210㎡	도시계획과	55	
문화예술체육부문			12,920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소래 옛모습 전시관 지붕보수 공사	1식	문화홍보실	34	
○문화재시설 정비 및 보수	6개소	문화홍보실	10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	면적 34,020㎡	문화홍보실	2,900	
○공공체육시설 보강.보수	1식	문화홍보실	25	
○청소년 선호시설 및 놀이 시설정비	1식	문화홍보실	28	
○소래포구 축제 지원	1식	문화홍보실	170	
○청소년공부방(50석이상) 운영	1식	문화홍보실	11	
○구월정 조성	건물 223.2㎡ (표적 3대)	문화홍보실	548	
○남호정 조성사업	건물 230.4㎡ (표적 3대)	문화홍보실	885	
○청소년 정보센터 개설	1식	인천광역시	144	
○남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지하1층,지상3층 (A=4,732.69㎡)	도시정비과	8,165	
교육행정부문			12,853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	1식	총 무 과	800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	1식	총 무 과	22	
○동부초교 야외교실 및 인터넷방송국 설치	1식	총 무 과	100	
○문일여고 체육관 개보수	1식	총 무 과	100	
○소래초교 교육정보화 사업	1식	총 무 과	100	
○간석초교 전자도서관설치 및 과학실 현대화 사업	1식	총 무 과	100	
○주원초교 전자도서관설치 및 과학실 현대화 사업	1식	총 무 과	100	
○문성정보미디어고 체육시설 설치	1식	총 무 과	100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구월서초교 도서관 설치	1식	총 무 과	100	
○간석초등학교 교실 증축	18.5실	동부교육청	1,756	
○약산초등학교 교실 증축	17.5실	동부교육청	1,679	
○논곡중학교 급식시설 확충	시설지원	동부교육청	70	
○성리중학교(가칭) 신축	36학급	동부교육청	1,065	
○석정중학교(가칭) 신축	24학급	동부교육청	6,761	
상수도부문			28,650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	V=45,000㎥	상수도사업본부	17,110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V=20,000㎥	상수도사업본부	10,751	
○구월4동 1299번지 금강빌라 부근 노후관 교체	φ 100mm, L=270m	남동수도사업소	45	
○구월4동 1305번지 복개천 부근 노후관 교체	φ 100mm, L=422m	남동수도사업소	79	
○간석1동 415번지 신태양아파트 부근 노후관 교체	φ 100mm, L=260m	남동수도사업소	53	
○간석1동 440번지부근 노후관 교체	φ 200mm, L=330m	남동수도사업소	120	
○간석2동 189번지 희망백화점 부근 노후관 교체	φ 150mm, L=210m	남동수도사업소	50	
○간석4동 220번지 간석 지하차도옆 노후관 교체	φ 200mm, L=200m	남동수도사업소	60	
○간석4동 250번지 경복예식장 부근 노후관 교체	φ 100mm, L=596m	남동수도사업소	122	
○만수5동 881번지 신화아파트 부근 노후관 교체	φ 200mm, L=250m	남동수도사업소	60	
○남동공단내 구역고립 및 병합계량 후속사업	φ 400~700mm, L=30m	남동수도사업소	200	
기 타 부 문			6,751	
○남동구상징조형물설치	1식	기획감사실	80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부서	예산액	비 고
○초고속 광 종합통신망 구축	1식	총 무 과	570	
○장수서창동사무소 청사 건립	지하1층,지상3층	자치행정과	2,505	
○만수3동사무소 청사 건립	지하1층,지상3층	자치행정과	3,519	
○구월2동사무소 청사 설계용역	지하1층,지상3층	자치행정과	6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덮개 설치	4개소	자치행정과	12	
○간석주공맨션 재건축사업	1,733세대	금호산업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8,934세대	현대건설, 롯데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 - 101호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융자지원규모 : 70억원

● 융자지원대상

1. 남동구관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중인 제조업체로 전업을 30%이상인 업체
2.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한 소기업체로 건축물의 사용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업체 및 제조업관련 지식 서비스업체
※ 시·군·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상환중인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

1. 융자금액 : 업체당 2억원이내
2. 융자기간 : 3년(6개월거치 5회균등분할상환)
3. 대출금리 : 3.5%~4.7%(보증서담보시 3.5%, 기타담보시 : 4.7%)
4.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가능)
5. 취급은행 : 한미은행 각 지점

● 융자신청 및 접수

1. 신청접수 일정

- (1) 상반기 : 2004. 5. 3 ~ 5. 14
- (2) 하반기 : 2004. 9. 1 ~ 9. 13

2. 접 수 처 :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3. 구비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사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 가점 해당기업은 증빙서류 각 1부

4. 접수방법

구 분	내 용
융자신청서 비치	○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및 한미은행 각 지점 ○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융자신청서 접수	○ 한미은행 각 지점을 통해 융자상담후 융자신청서상에 상담 사실을 필히 확인받아 ○ 남동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

● 문의 및 상담

-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453-2526, FAX453-2479)
- 남동구 홈페이지 (www.namdong.incheon.kr)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공장등록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융자신청액		백만원(₩)	
업 종		(산업분류번호:)		담보종류		보증서(), 부동산(), 기타()	
매 출		주생산품 :		공장규모		공장 건축면적 : m'	
		2003년도	백만원	종업원수		명	
자 본		자기자본	백만원	수 출		2003년도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2004년도	백만원
가 점 해당관	유수출업체	유망중소기업지정업체	KS·ISO등 인증기업체	벤처 기업체	공예품 육성업체	협동화 사업체	해외시장 개척업체 참여업체

인천광역시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04년 월 일

신청인 : (인)

은행융자 상담 확인란		공장등록확인란 (구청에서 확인)
상담지점	은행 지점	
운전자금 대출여부	자금명 : 현잔액 : 백만원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	
	추천금액 : 백만원(₩)	
상담일자	2004년 월 일	
상 담 자	성명 : (인)	성명 : (인)

※ 실제 융자금액은 은행의 최종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자금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사확인본)
④ 가점 해당기업은 증빙서류 각1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계획서

1. 자금사용계획

○ 융자금의 사용목적 :

○ 융자금의 세부사용계획 :

2. 은행담보 계획

○ 보증서 · 부동산 · 신용 · 기타

3. 융자금 상환계획

4. 기타(회사소개등)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10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열람 하오니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있는 경우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2.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50	20	국지 도로	820	간석동 394 (간석역 광장)	간석동 485 (대3-13호선)	일반 도로		인고제 98-37	
변경	중로	1	150	20	국지 도로	811	간석동 394 (간석역 광장)	간석동 485-12 (대3-13호선)	일반 도로			일부구간 중복 (공원·철도:104m)결정

나. 공공시설

(1)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학 교	중 학 교	구월동 24번지	-	중)11,221	11,221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50호선	중로 1-150호선	• 폐지 연장=113m 폭원=20m • 신설 연장=104m 폭원=20m	중앙공원2지구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2003. 4. 21일 “중앙공원2지구 공원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간석1동사무소에서 개최한 결과 간석1동 석산길(희망백화점↔주원고개)에서 간석역길(국민은행주안지점)로 진입불편 및 병목현상 등의 사유로 현 도로구간중 중앙공원(2지구)과 접한 도로구간(간석동485-17)을 변경하여 중앙공원(2지구)부지 안으로 선형변경(현 석산길과 간석역길을 직선도로화)을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하고자함

2.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사), 남동구홈페이지 게재, 구보 게재,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3.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4)

5. 첨부 : 도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 105호

민간용역(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버스전용차로 및 특정(중점)관리지역 불법주정차단속(계도)민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장정기간 2004. 3 ~2005. 2.)

다. 용역내용

(1) 대 상 : 버스전용차로 5개노선 21km 및 특정(중점)관리지역 3.4km

(2) 범 위

-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 위반차량 증거 채증 및 운영시간외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보조, 도보예방순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경고장 부착 및 이동요구, 단속활동 보조 등
- 필요시 주차안내 및 교통정리
-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3) 인력 및 장비

- 용역원 : 8명
- 경 차 : 4대 【마티즈, 노란색(경광등부착)】
- 통신장비 : 무전기 또는 전화기(휴대폰) 8대
- 기 타 :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4대 또는 무선이동단속기기(P.D.A)

다. 기초금액 : ₩197,997,120원(부가세 포함)

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4. 02.24(화) 09:00~2004. 03.05(금) 18:00

※ 인력 및 장비보유 기타증빙서는 과업설명일 남동구청 교통과로 반드시 방문 제출

(단, 기간내 미제출자는 개찰시 제외)

- 인력현황 : 재직증명서 8매(1인 1매)
- 장비현황 : 자동차등록증 4매 또는 임대계약서(리스) 사본 4매(대당 1매)
- 기 타 : 법인등기부등본 [경비(용역)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04.03. 06(토) 10: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과업설명일 : 2004. 02. 23(월) 14:00 남동구청 2층 교통과

※ 과업설명회 참여(방문)업체 및 증빙서류 제출업체만이 투찰이 가능함.

2.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갖추고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나.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이용자등록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경비(용역)사업자 등록법인 업체

3.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 및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다. 입찰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로 제출
- 라.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적격검사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예정 가격의 하한선(87.745%)미만 부적격자 및 1.2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 마.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0호)에 의한 처리 경험 및 경영상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낙찰자 통보기한일 : 2004년 03월 12일한

7. 예정가격의 결정

- 가. 기초금액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8.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 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청(교통과)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교통과)(☎453-273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 02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경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 - 106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전자입찰)**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 전기공사(2.3호 광장)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 일
- 공사개요
 - 공원등 전기공사(LP-A PANEL) 1식
 - 공원등 전기공사(LP-B PANEL) 1식
- 설계금액 : 141,530,000원(관급74,300,000원 , 한전수탁비3,330,000원
안전점검비 320,000원 포함)
-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4년 2월18일(수)오전09:00 ~ 2004년 2월24일(화)오후14: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 2월24일(화) 15: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열람일시 및 장소 : 2004년2월18일(수)~2004년2월24일(화) [문화홍보실]
-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 있는 G2B(국가종합전자조
달)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업체로서,
-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5.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 입찰 후 낙찰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 제출

○ 적격심사 서류제출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36호,2004.2.6)

에 의한 경영상태평가(10점)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낙찰자 통보 : 적격심사 후 2004. 3. 4한 통보

7. 예정가격의 결정

○ 설계금액중 관급액등을 제외한 기초금액(63,580,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할수 있음과 동시에 계약채결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004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4 - 107호

(긴급)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 용역개요

-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검토 및 구상안 검토
-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 도시공원법 제4조5호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인.허가 도서 작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및 사업관련 인.허가 도서 및 변경도서 작성
- 연안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및 사업관련 인.허가(변경)도서 작성

○ 용역범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번지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설계금액 : 131,215,000원 (※추정가격119,286,364, 부가세11,928,636)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4년 2월18일(수) 오전09:00~2월25일(수)오후16: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 2월 25일(수) 17: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에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부문(토목구조,상하수도,도시계획,조경)신고를 필한G2B(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조달이용자등록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사업소)를 둔 자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7호 2004. 2. 6)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
-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내로 제출
-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7호 2004.2. 6) 제4조에 의한 서류(①적격심사신청서,②적격심사자기평가및심사표,③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④계무제표)

6. 낙찰자 통보예정일 : 2004. 3. 5한.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131,215,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004 년 2 월 18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4 - 108호

(긴 급)용 역 입 찰 공 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소래포구(항) 정비공사(3단계) 실시설계 용역

○ 용역내용

- 소래포구 정비 기본계획 검토
- 소래포구(항) 정비공사(3단계) 실시설계
- 공유수면 매립 관련도서 작성
- 피해영향 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설계금액 : 46,123,000원 (※기초금액과 동일)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4년 2월 18일(수)오전09:00~2004년 2월 24일(화)오후12: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 2월 24일(화) 13: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부문 (항만및해안 ,토질 및기초,토목구조,조경분야)신고를 필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업체
이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사업소)를 둔 자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 및 기술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차치부예규 제137호 2004. 2. 6)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5일 이내로 제출

○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처처부예규 제137호 2004. 2. 6) 제4조에 의한
서류 제출

6. 낙찰자 통보예정일 : 2004. 3. 5한.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46,123,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004 년 2 월 18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4 - 109호

(긴급)용 역 입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인천대공원~9공수간 인도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가 용역개요

○ 설계구간

- 위치 :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69번지 일원(9공수 진입도로)
- 규모 : 연장 L=1.75km, B=20m

○ 일반사항

- 현지조사 분석, - 측량, - 실시설계,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 설계방향 및 설계방안 제시,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작성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 설계금액 : 67,331,000원 (※추정가격61,210,000, 부가세6,121,000)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4년 2월19일(목) 오전09:00~2월26일(목)오후16:00

○ 입찰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 2월 26일(목) 17:00 입찰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부문(도로및공항,상하수도,도시계획,조경)신고를 필한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조달이용자등록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에 주된 영업소(사업소)를 둔 자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7호 2004. 2. 6)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
-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이내로 제출
-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7호 2004.2. 6) 제4조에 의한 서류①적격심사신청서,②적격심사자기평가맞심사표,③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④제무제표)

6. 낙찰자 통보예정일 : 2004. 3. 5한.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67,331,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004 년 2 월 18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 - 1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성 명 : 김 영 순

공시기간 : 2004. 2. 19 ~ 3. 4(14일간)

제 목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1. 아래 소유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기준) 제1항 8호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2. 우편물(수취인 부재)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과 (☎ 032-453-2423)에서 공문을 수령하신후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공시기간 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5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송 달 내 역

순번	정화조 소재지	소유자	소유자 주소지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금액(원)	비고
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302-55번지성화빌라 3동	김영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427-49번지	2. 19 ~ 3. 4	50,000 (3동 전체 40만원)	

※ 동일정화조를 사용하는 B라인 대표가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사항을 송달자에게 유선통화로 알려준 사항. 끝.

2004. 2.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 - 113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04년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04. 12. 31일까지(남동구 관내 전지역)

다. 용역개요

- 중점관리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1일 7명 / 근무시간14:00~22:00)
- 야시장, 행락지등 수시 행정대집행(50명×4회)
- 행정대집행 : 2회

라. 용역예정금액 : 269,608,900원(추정가격 245,099,000원, 부가세24,509,900원)

마. 기초금액 : 269,608,900원(부가세 포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4. 2. 20(금)09:00 ~ 2004. 2. 27(금) 13:00

사. 전자입찰 집행일시 및 장소 : 2004. 2. 27(금) 15:00 입찰 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용역과업지시서,계약특수조건 등은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담당자 (☎032-453-2563)에게 열람 및 문의)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 자

다. 사업목적이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전문법인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또는 철거지역 사후관리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행정대집

행시 보조인부용역,특별(특수)인부용역, 지장물정비보조인부용역,노점상정비지역

사후관리용역 중 1개 분야 이상 명시되어있는 업체(단,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허가

법인은 제외)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인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술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6.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인천광역시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30점)와 가격입찰 점수(70점)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 2004. 3. 10한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269,608,9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시행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회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입찰 관련법규(회계예규 등)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결과/적격심사결과/최종낙찰자) 및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incheon.kr>)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구 자치행정과 (032-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 2. 1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 - 114호

용역(재공고)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5번지

다. 용역개요

- 대지면적 : 12,528㎡(3,789.7평)

- 연면적 : 4,700.67㎡(1,421.95평)

- 층수 : 지하1층 / 지상3층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사무실, 다목적체육관

라. 용역예정금액 : 154,799,700원(추정가격140,727,000원, 부가가치세 14,072,700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154,799,700원 입니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540일

2.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

나.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04. 2. 21 (토) 09:00 ~ 2004. 2. 26 (목) 13: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4. 2. 26 (목) 14:00

마.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나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내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록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

※ 열람기간 : 2004. 2. 21 (토) ~ 2. 26 (목)

6. 공동도급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04. 2. 26(목) (13:00)

※ 금번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은 건축감리, 토목감리, 기계설비감리 등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용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건축전문감리와 종합감리전문회사는 위 세가지 감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건축사 사무소의 경우 건축감리만 필한 업체는 토목감리 전문회사 및 기계설비감리전문회사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건축사사무소가 대표사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건축사사무소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 토목감리 및 기계설비감리전문회사 모두 인천지역에 주된사업소(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타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시는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사사무소는 단독입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여할 시 반드시 공동도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입찰서 제출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나. 구성방식 : 분담이행방식

다. 대 표 사 :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나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 한 업체

라.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제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국고귀속사유 발생시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천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8호 및 제100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수행능력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의 규정예의한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 및 제100호),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32-453-2640) 또는 자치행정과(032-453-221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namdong.incheon.kr>)의 「고시.공고」란에 게재합니다.

2004. 2.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경 리 관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4-1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윤태진외 17명의 정기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4 년 2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재 산 변 동 사 항 공 개 목 록

1. 인천광역시남동구

①소속	남동구청	②직위	구청장	③성명	윤 태 진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 산 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본 인	채 무	한미은행(20,000) 대출금감소		20,000	
	소 계			20,000	
배우자	전세권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택, 92㎡ 감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가주택, 115.63㎡ 증가		△25,000 25,000	계약만기 계약
	채 무	삼성생명보험(8,000), 제일은행(2,042) 대출금감소		10,042	
	소 계			10,042	
모	예 금	농협(4,575) 예금감소		△4,575	
	소 계			△4,575	
합 계				25,467	

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 원	③성명	김 상 호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본 인	전세권	남동구 만수동 1014-1, 상가 1,350.94㎡ 감소		△150,000	계약만료
		남동구 만수동 981-5 동광빌딩 1층 232.98㎡ 증가		90,000	계약
	자동차	'94년식 마이티 중형화물 인천80다5687(취득가액 5,000천원)			폐차
		'98년식 포토 초장축화물 인천80러3603 (취득가액 5,000천원)			신규
		'01년식 프런티어 냉동탑차 인천80고5442(취득가액 10,000천원)			신규
	예 금	교보생명보험(3,120), 신한(20,000) 농협(21,177), 삼성생명보험(1,932)		46,229	
		예금증가			
		한미은행(2,323) 예금감소		△2,323	
	채 무	농협(38,013) 대출금증가		△38,013	
	소 계			△54,107	
배우자	자동차	'95년식 엑센트 배기량 1495cc, 인천4머6108(취득가액 5,000천원)			매도
		'02년식 산타페 인천32너5040 (취득가액 21,000천원)			신규
		'02년식 오택봉고 프런티어 냉동차 인천83다5910(취득가액 10,000천원)			신규
	예 금	교보생명보험(8,810) 신한(20,000) 제일투자신탁(70,000), 한미은행 (10,000) 예금증가		108,810	
		국민은행(20,187), 농협(18,373) 제일투자신탁증권(73,570) 예금감소		△112,130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 원	③성명	김 상 호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배우자	유가증권	주식 삼성증권 700주 증가 주식 현대증권 1,000주, 아시아나항 공 1,000주, 한화 1,500주, 현대건설 4,500주, SK증권 4,500주 감소		17,500 △29,317	신규
	소 계			△15,137	
장 녀	예 금	신협(15,000) 예금증가		15,000	
	소 계			15,000	
합 계				△54,244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 원	③성명	김 기 흥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본 인	자동차	'99년식 베르나 배기량 1495cc, 서울47거6663(취득가액 8,000천원) '02년식 라세티 배기량 1500cc, 인천35머5368(취득가액 12,000천원)			폐차 신규
	예 금	우리은행(21,065), 푸르덴셜생명보험 (1,668) 예금증가 국민은행(4,111), 한빛은행(19,188) 예금감소		22,733 △23,299	
	소 계			△566	
배우자	예 금	국민은행(3,050), 한미은행(7,790) 예금증가		10,840	
	소 계			10,840	
합 계				10,274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 원	③성명	국 중 일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본 인	주 택	인천 남동구 만수동 제1호 (대지 122㎡, 건물 32.89㎡) 감소		△17,536	매도
	자동차	'95년식 소나타골드 배기량 1997cc, 인천1모 9523(취득가액 14,800천원) '97년식 라노스 배기량 1500cc, 인천31노 3420(취득가액 2,000천원) '03년식 오피러스 배기량 3000cc, 인천32더704T(취득가액 41,500천원)			매도 매입 매입
	예 금	교보생명보험(1,923), 우리은행(867) 예금증가		2,790	
	채 무	새마을금고(8,290) 예금감소 새마을금고(110,000), 대출금감소		△8,290 110,000	
	소 계			86,964	
배우자	예 금	교보생명보험(2,792), 농협(4,176) 대한생명보험(507), 알리안츠제일 생명보험(1,878), 우체국(3,485) 예금증가		12,838	
	소 계			12,838	
합 계				99,802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 원	③성명	김 승 태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변동사항없음"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원	③성명	장 석 호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액 (천원)	⑧비고
본인	예금	한미은행(516), 새마을금고(7,221)		7,737	
	채무	예금증가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7-21 화성 빌라 임대(전세)보증금 감소		12,000	
	소계			19,737	
배우자	예금	농협(310), 한미은행(163) 예금증가 새마을금고(24,531) 예금감소		473 △24,531	
	소계			△24,058	
장남	예금	새마을금고(4,000) 예금증가		4,000	
	소계			4,000	
합계				△321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원	③성명	윤창렬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액 (천원)	⑧비고
본인	예금	농협(31,800), 동부화재해상보험 (14,236) 예금감소		△46,036	
	채무	농협(10,000) 대출금증가 농협(45,769) 대출금감소		△10,000 45,769	
	소계			△10,267	
배우자	예금	농협(4,697) 예금감소		△4,697	
	소계			△4,697	
합계				△14,964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 원	③성명	고 병 식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본 인	답	인천 남동구 논현동 395-6 32㎡ 감소		△4,608	매도
	주 택	인천 남동구 논현동 대지 603㎡, 건물 112.47㎡ 감소		△16,870	매도
	빌 라	인천 남동구 남촌동 338-2 우성그린 빌라, 66.30㎡ 감소		△64,000	매도
	아파트	인천 남동구 도림동 630-1 도림주공아파트 76.28㎡		180,000	매입
	채 무	국민은행(30,000) 대출금 증가 국민은행(65,000), 농협(85,000), 농협(40,809) 대출금감소		△30,000 190,809	
	소 계			255,331	
합 계				255,331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 원	③성명	이 용 길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본 인	자동차	'95년식 엘란트라 인천34나6453 (취득가액 4,000천원)			신규
	소 계			0	
배우자	예 금	대한생명보험(15,493) 예금증가		15,493	19개 종목
	소 계			15,493	
합 계				15,493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 원	③성명	서 정 수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변동사항없음"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 원	③성명	박 민 수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본 인	빌 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182-6 삼익목화 빌라, 115.50㎡ 감소	△68,925	매도 (명의변경)	
	자동차	'93년식 와이드봉고 배기량 2367cc, 인천80다4325(취득가액 1,000천원) '03년식 렉스턴 2874cc, 인천32거9570(취득가액 26,000)		매도	
	예 금	국민은행(550) 예금증가	550	매입	
	채 무	새마을금고(1,606) 예금감소 주택은행(12,692) 대출금감소 인천 남구 송의동 임대(전세)보증금 1건 감소	△1,606 12,692 2,000	보증금반환	
	소 계		△55,289		
배우자	빌 라	인천 남동구 간석2동 182-6 삼익목화 빌라, 115.50㎡ 증가	68,925	명의변경	
	소 계		68,925		
합 계			13,636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 원	③성명	김 정 학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본 인	예 금	새마을금고(10,000) 대출금증가	△10,000		
	소 계		△10,000		
장 남	자동차	'02년식 카렌스PG 배기량 1793cc, 인천32머4186		신규	
	소 계		0		
합 계			△10,000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원	③성명	김 석 우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본 인	자동차	'04년식 산타페 인천27너1804 (취득가액 28,000천원)		신규	
	예 금	교보생명보험(1,120), 삼성생명보험 (8,070), 신한(995), 농협(1,146), 대한 생명보험(5,010), 새마을금고(3,821)	29,762		
	유가증권 채 무	현대해상화재보험(9,600) 예금증가 주식 : 인천공항리무진 15,000주 감소 현대캐피탈(23,200) 대출금증가 신협(10,000), 새마을금고(6,076) 대출금감소	△150,000 △23,200 16,076		
	소 계		△127,362		
배우자	예 금	교보생명보험(459), 국제생명보험 (415), 대한생명보험(2,145), 삼성생 명보험(3,401) 예금증가	6,420		
	유가증권 채 무	주식 : 인천공항리무진 6,000주 증가 새마을금고(30,000) 대출금증가 국민은행(565) 대출금감소	60,000 △30,000 565		
	소 계		36,985		
합 계			△90,377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원	③성명	서 원 석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본인	예 금 채 무	농협(32,697) 예금감소 농협(50,000) 대출금감소	△32,697 50,000		
	소 계		17,303		
합 계			17,303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원	③성명	전익수
④본인과의관계	⑤재산의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액 (천원)	⑧비고
본인	상가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69-11 대지 257.90㎡, 근린생활시설		189,063	산축
	자동차	'04년식 쏘렌토 배기량 2497cc, 인천33두6115(취득가액 28,000천원)			신규
	예금	농협(6,922), 대한생명보험(1,220) 예금 증가		8,142	
	채무	수협(2,535) 예금감소		△2,535	
		수협(88,456) 대출금증가		△88,456	
		수협(30,000) 대출금감소		30,000	
		경기 안산시 본오동 969-11 임대(전세) 보증금 5건 증가		△134,000	
	소계			2,214	
배우자	예금	대한생명보험(2,908), 삼성생명보험 (600) 예금증가		3,508	
		수협(107,842) 예금감소		△107,842	
	소계			△104,334	
장남	예금	대한생명보험(7,441), 수협(1,863) 예금증가		9,304	
	소계			9,304	
차남	예금	대한생명보험(4,754), 수협(36) 예금증가		4,790	
	소계			4,790	
합계				△88,026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 원	③성명	강 석 구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본 인	예 금 채 무	삼성생명보험(4,020) 예금증가 새마을금고(39,284) 대출금증가 인천 남동구 간석1동 308-9 진양맨션 임대(전세)보증금 증가 인천 남동구 간석동 308-2 국제빌라 임대(전세)보증금 2건 감소		4,020 △39,284 △8,000 15,000	보증금반환
	소 계			△28,264	
배우자	예 금	삼성생명보험(735) 예금증가		735	
	소 계			735	
장 남	예 금	삼성생명보험(5,606), 새마을금고 (1,826) 예금증가		7,432	
	소 계			7,432	
장 녀	예 금	삼성생명보험(5,606) 예금감소		△5,606	명의변경
	소 계			△5,606	
합 계				△25,703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 원	③성명	주 정 분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본 인	예 금	코오롱매트보험(1,200) 예금증가 새마을금고(3,963), 주택은행(5,219) 예금감소		1,200 △9,182	
	채 권	(사인간 채권 1건 감소)		△35,000	
	소 계			△42,982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 원	③성명	주 정 분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배우자	자동차	'03년식 1톤 봉고트럭 인천80고 4181(취득가액 12,000천원)			신규
	예 금	교보생명보험(471), 한미은행 (70,344) 예금증가		70,815	
	소 계			70,815	
장남	예 금	조흥은행(8,953), 교보생명보험 (1,650), 대한생명보험(1,725)		14,700	
	채 무	AIG생명보험(2,372) 예금증가 주택은행(3,790) 대출금감소		3,790	
	소 계			18,490	
차 남	예 금	교보생명보험(1,622) 대한생명보험(1,863), 새마을금고 (10,000) 예금증가		13,485	
	소 계			13,485	
합 계				59,808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 원	③성명	이 귀 영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 액 (천원)	⑧비 고
본 인	임 야	경북 봉화군 풍호리 산50-3 25,190㎡		△2,770	매도 매도
		경북 봉화군 풍호리 산50-2 12,446㎡		△1,991	
	예 금	대한생명보험(8,589), 삼성생명보험 (9,116), 예금감소		△17,705	
	채 무	우리은행(4,229) 대출금증가 우리은행(255,000) 대출금감소		△4,229 255,000	
	소 계			228,305	

①소속	남동구의회	②직위	의원	③성명	이귀영
④본인과 의관계	⑤재산의 종류	⑥소재지 . 면적등 권리명세		⑦가액 (천원)	⑧비고
배우자	채무	한빛은행(10,000) 대출금감소		10,000	
	소계			10,000	
장남					고지거부
차남					고지거부
합계				238,305	

